

2021년도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을 모집합니다

온라인복권(이하 '로또복권'이라 함)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2일
(주)동행복권 대표이사

1. 모집개요

가. 모집인원 : 총 2,084명 (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)

나. 모집지역 : 전국 225개 시·군·구 지역

* 지역별 인구수,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.

다. 지역별 모집인원

○ 별지 「'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」 참조

○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(시/군/구)을 선택하여 신청 (중복신청 불가)

*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(2021. 5. 17. 18:00)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

2. 신청자격

가. 공통사항
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

○ 민법상 만 19세 (2002. 5. 17. 이전 출생자) 이상인 분 (신분증 상 생년월일)

나. 자격기준 : 신청기간 현재 ¹⁾우선계약대상자, ²⁾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

1) (우선계약대상자)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·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

2) (차상위계층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·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

<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>

○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30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→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→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
→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→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분 중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→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분 중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」 제2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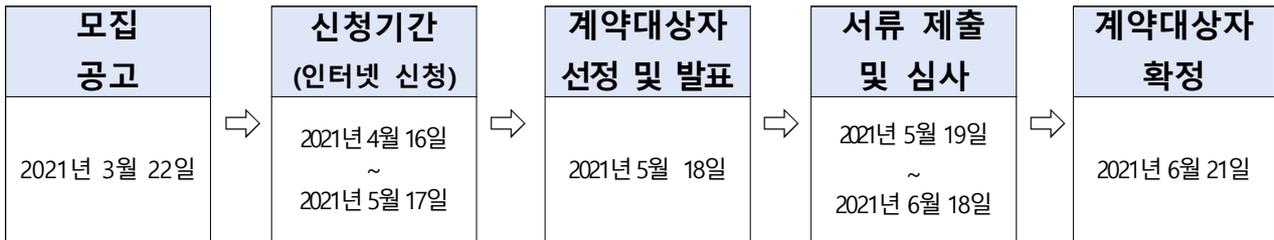
-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결정·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→ 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결정·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→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(2세 환자 포함)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결정·등록된 참전유공자
→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결정·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→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
→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

다. 신청제한

1.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(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)에 대한 포기, 해지, 해제,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
2.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「민법」 제10조(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)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
 - *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(대리권등목록[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-제한없음-으로 표기])를 제출
3.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(사병), 사회복지시설,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
4.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,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채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
5. 법인사업자,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(임시, 기간제, 임용예정자 포함) 및 공공기관 재직자
 - *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37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
 - **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0조(영리업무의 금지)
6.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(기소유예 이상)받은 사실이 있는 분
7.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(지역별 50m ~ 300m 이내)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
8. (주)동행복권과 '온라인복권 판매계약'을 체결하고 있는 분
 - ※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(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)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.

3. 모집일정

<모 집 일 정>



가. 모집공고 : 2021. 3. 22(월)

나. 신청기간 : 2021. 4. 16(금) 10:00 ~ 2021. 5. 17(월) 18:00

다.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: 2021. 5. 18(화) 18:00

*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(순번 포함)를 함께 선정합니다.

**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'우편물 수령지'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.

라. 서류제출 및 심사 : 2021. 5. 19(수) ~ 2021. 6. 18(금)

*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,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)

마. 계약대상자 확정 : 2021. 6. 21(월)

*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,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(주)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.

바.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

- 개설 승인 기준 :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
-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: '21년 12월 31일(금) 18시까지
-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: '22년 6월 30일(목) 18시까지

4. 신청 [인터넷 신청]

가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4. 16(금) 10:00 ~ 2021. 5. 17(월) 18:00
- 신청방법 : (주)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「판매인 모집공고」 를 통한 인터넷 신청
- 신청내용 :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
 - *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,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(시·군·구)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.

나. 신청 유의사항

-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'추후 모집 대상 제외'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,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, 연락 불능,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5.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

가.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: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·군·구(기초자치단체 기준)별 무작위 추첨

나.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: 2021. 5. 18(화) 18:00

다.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: (주)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「판매인 모집공고」 에 게시 및 문자(SMS)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

*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.

6.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

가. 서류제출 및 심사: 2021. 5. 19(수) ~ 2021. 6 18(금)

*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통보 드립니다.

나. 제출서류 :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<표>를 참조

<자격 심사 구비 서류>

계약대상자 자격	구비서류	비고
장애인	장애인 증명서 *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'후견등기사항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, 대리권 등록 포함) 제출	신분증, 신용보고서 지참
기초생활수급자	수급자 증명서	
한부모가정의 세대주	한부모가족증명서	
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	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서	
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	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서	
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	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	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	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확인서	
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	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서	
참전유공자	참전유공자확인서	
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	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서	
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	. 차상위계층확인서 .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.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. 차상위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.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(급여)대상자	

[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]

- .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 관련 증명서: 복지포털사이트(온라인) 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(오프라인)
- .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증명서,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: 정부24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 등

*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(수권자)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**신분증(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주민등록증, 여권)**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
** '구비서류'는 신청기간('21.4.16. ~ '21.5.17.)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인터넷 신청 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,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→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'급여결정 통지서'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다. 서류 제출 장소 : 각 지역 (주)동행복권 영업센터(당첨자에게 개별 안내)

○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*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.

라.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: SMS발송,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.

7.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

가. 판매수수료율 : 로또복권 판매액의 5% (부가가치세 별도)

나. 계약기간 : 계약 체결일 ~ 2021년 12월 31일(금)

* '22년 개설자의 계약기간: 계약체결일 ~ 2022년 12월 31일(토)

**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다. 계약 준비 사항

-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.
-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·훼손·파손·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(보험료 등)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.
-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(금)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(임대차계약서 구비)하여 (주)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(주)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 하셔야 하며, (주)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「제3자 판매허용 기준」 과 (주)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(거리제한 등)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
- 계약대상자는 '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.

◇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(주)동행복권과 협의 후 (주)동행복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◇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 또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계약대상자는 '21년 12월 31일(금)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 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되며,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매인 신청자의 책임입니다.

8. 특별 유의사항

- 가.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나.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,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다.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·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(주)동행복권은 위·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라.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(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, 의료비감면 등)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바.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사.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(추첨식, 즉석식)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아.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, 사망,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(일정 미준수)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.
- 자. 로또복권 판매계약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*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**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**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'후견 등기사항증명서(대리권등목록 [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-제한없음으로 표기], 포함)'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→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계약서 작성 불가

9. 기타 참고사항

가. 본 공고문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(주)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탈락자 및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다. 모집지역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총 798명을 추가 선정합니다. 모집지역 계약 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드립니다.

라. 예비후보자에 대한 통보는 등기(유선 연락 총 3회 '1일 1회' 기준)로 진행되며, 계약 자격(연락두절 등) 포기 시 다음 순번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.

* 예비후보자에 대한 계약체결 안내는 해당 지역 영업사원을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.

[지역별 모집인원(계약대상자) 및 예비후보자 인원]

- 예비후보자는 총 798명이며 우선계약대상자(472명) 및 차상위계층(326명)을 선정합니다.
 - 예비후보자의 계약자격은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'우선계약대상자' 또는, '차상위계층대상자'가 계약자격을 포기하여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부여됩니다.
 - (주)동행복권이 서류심사 시에 제출받은 서류 외에 자격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응 하셔야 합니다.
- ※ '구비서류'는 신청기간('21.4.16. ~ '21.5.17.)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마. 계약대상자가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(주)동행복권이 정하는 거리제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.

바. 기타사항은 (주)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(1588-64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] '21년 지역별 모집수(가나다 순)

시도	구분		우선계약대상자		차상위계층	
	시군구	모집 합계(A=B+C)	계약대상자(B)	예비후보자	계약대상자(C)	예비후보자
강원 (51명)	강릉시	5	3	1	2	1
	고성군	2	1	1	1	1
	동해시	1	1	1	0	0
	삼척시	2	1	1	1	1
	속초시	1	1	1	0	0
	양구군	3	2	1	1	1
	양양군	1	1	1	0	0
	영월군	4	2	1	2	1
	원주시	10	6	2	4	1
	인제군	2	1	1	1	1
	정선군	2	1	1	1	1
	철원군	1	1	1	0	0
	춘천시	7	4	1	3	1
	태백시	2	1	1	1	1
	평창군	2	1	1	1	1
	홍천군	2	1	1	1	1
	화천군	3	2	1	1	1
횡성군	1	1	1	0	0	
경기 (626명)	가평군	4	2	1	2	1
	고양시	41	24	8	17	6
	과천시	9	5	2	4	1
	광명시	18	11	4	7	2
	광주시	12	7	2	5	2
	구리시	7	4	1	3	1
	군포시	14	8	3	6	2
	김포시	15	9	3	6	2
	남양주시	26	15	5	11	4
	동두천시	4	2	1	2	1
	부천시	45	27	11	18	6
	성남시	77	42	17	35	10
	수원시	54	32	13	22	9
	시흥시	32	19	6	13	4
	안산시	25	15	5	10	3
	안성시	8	5	2	3	1
	안양시	17	10	3	7	2
	양주시	8	5	2	3	1
	양평군	7	4	1	3	1
	여주시	5	3	1	2	1
	연천군	1	1	1	0	0
	오산시	14	8	3	6	2
	용인시	36	21	7	15	5
	의왕시	8	5	2	3	1
	의정부시	30	18	6	12	4
	이천시	13	8	3	5	2
	파주시	24	14	5	10	3
	평택시	29	17	6	12	4
	포천시	8	5	2	3	1
	하남시	14	8	3	6	2
화성시	21	12	4	9	3	
	거제시	15	9	3	6	2
	거창군	3	2	1	1	1
	고성군	2	1	1	1	1

구분		우선계약대상자			차상위계층	
시도	시군구	모집 합계(A=B+C)	계약대상자(B)	예비후보자	계약대상자(C)	예비후보자
경남 (153명)	김해시	22	13	4	9	3
	남해군	4	2	1	2	1
	밀양시	2	1	1	1	1
	사천시	2	1	1	1	1
	산청군	3	2	1	1	1
	양산시	10	6	2	4	1
	의령군	2	1	1	1	1
	진주시	14	8	3	6	2
	창녕군	2	1	1	1	1
	창원시	51	30	12	21	8
	통영시	7	4	1	3	1
	하동군	3	2	1	1	1
	함안군	3	2	1	1	1
	함양군	4	2	1	2	1
합천군	4	2	1	2	1	
경북 (99명)	경산시	15	9	3	6	2
	경주시	6	4	1	2	1
	고령군	2	1	1	1	1
	구미시	15	9	3	6	2
	군위군	1	1	1	0	0
	김천시	7	4	1	3	1
	문경시	4	2	1	2	1
	상주시	2	1	1	1	1
	성주군	1	1	1	0	0
	안동시	5	3	1	2	1
	영양군	1	1	1	0	0
	영주시	5	3	1	2	1
	영천시	1	1	1	0	0
	예천군	3	2	1	1	1
	울진군	1	1	1	0	0
	의성군	1	1	1	0	0
	청도군	1	1	1	0	0
	청송군	4	2	1	2	1
	칠곡군	5	3	1	2	1
포항시	19	11	4	8	3	
광주 (49명)	광산구	10	6	2	4	1
	남구	6	4	1	2	1
	동구	7	4	1	3	1
	북구	14	8	3	6	2
	서구	12	7	2	5	2
대구 (84명)	남구	5	3	1	2	1
	달서구	19	11	4	8	3
	달성군	4	2	1	2	1
	동구	10	6	2	4	1
	북구	18	11	4	7	2
	서구	9	5	2	4	1
	수성구	10	6	2	4	1
	중구	9	5	2	4	1
대전 (29명)	대덕구	3	2	1	1	1
	동구	5	3	1	2	1
	서구	9	5	2	4	1
	유성구	5	3	1	2	1
	중구	7	4	1	3	1
부산 (147명)	강서구	2	1	1	1	1
	금정구	9	5	2	4	1

구분		우선계약대상자			차상위계층	
시도	시군구	모집 합계(A=B+C)	계약대상자(B)	예비후보자	계약대상자(C)	예비후보자
	기장군	6	4	1	2	1
	남구	9	5	2	4	1
	동구	13	8	3	5	2
	동래구	13	8	3	5	2
	부산진구	15	9	3	6	2
	북구	10	6	2	4	1
	사상구	9	5	2	4	1
	사하구	7	4	1	3	1
	서구	3	2	1	1	1
	수영구	7	4	1	3	1
	연제구	11	7	2	4	1
	영도구	4	2	1	2	1
	중구	8	5	2	3	1
해운대구	21	12	4	9	3	
서울 (332명)	강남구	17	10	3	7	2
	강동구	12	7	2	5	2
	강북구	10	6	2	4	1
	강서구	19	11	4	8	3
	관악구	11	7	2	4	1
	광진구	9	5	2	4	1
	구로구	16	9	3	7	2
	금천구	7	4	1	3	1
	노원구	16	9	3	7	2
	도봉구	8	5	2	3	1
	동대문구	16	9	3	7	2
	동작구	15	9	3	6	2
	마포구	12	7	2	5	2
	서대문구	11	7	2	4	1
	서초구	29	17	6	12	4
	성동구	8	5	2	3	1
	성북구	12	7	2	5	2
	송파구	10	6	2	4	1
	양천구	17	10	3	7	2
	영등포구	20	12	4	8	3
용산구	11	7	2	4	1	
은평구	17	10	3	7	2	
종로구	15	9	3	6	2	
중구	6	4	1	2	1	
종랑구	8	5	2	3	1	
세종 (14명)	세종시	14	8	3	6	2
울산 (51명)	남구	14	8	3	6	2
	동구	9	5	2	4	1
	북구	8	5	2	3	1
	울주군	11	7	2	4	1
	중구	9	5	2	4	1
인천 (122명)	강화군	3	2	1	1	1
	계양구	13	8	3	5	2
	남동구	18	11	4	7	2
	동구	10	6	2	4	1
	미추홀구	23	14	5	9	3
	부평구	21	12	4	9	3
	서구	14	8	3	6	2
	연수구	15	9	3	6	2
중구	5	3	1	2	1	

구분		우선계약대상자			차상위계층	
시도	시군구	모집 합계(A=B+C)	계약대상자(B)	예비후보자	계약대상자(C)	예비후보자
전남 (63명)	강진군	3	2	1	1	1
	고흥군	1	1	1	0	0
	곡성군	1	1	1	0	0
	광양시	5	3	1	2	1
	구례군	1	1	1	0	0
	나주시	4	2	1	2	1
	담양군	2	1	1	1	1
	목포시	8	5	2	3	1
	무안군	2	1	1	1	1
	보성군	3	2	1	1	1
	순천시	7	4	1	3	1
	신안군	3	2	1	1	1
	여주시	4	2	1	2	1
	영광군	2	1	1	1	1
	영암군	2	1	1	1	1
	완도군	3	2	1	1	1
	장성군	1	1	1	0	0
	장흥군	2	1	1	1	1
	진도군	3	2	1	1	1
	함평군	2	1	1	1	1
해남군	3	2	1	1	1	
화순군	1	1	1	0	0	
전북 (52명)	고창군	2	1	1	1	1
	군산시	6	4	1	2	1
	김제시	2	1	1	1	1
	남원시	1	1	1	0	0
	무주군	2	1	1	1	1
	부안군	2	1	1	1	1
	순창군	2	1	1	1	1
	완주군	1	1	1	0	0
	익산시	8	5	2	3	1
	임실군	3	2	1	1	1
	장수군	2	1	1	1	1
	전주시	14	8	3	6	2
	정읍시	3	2	1	1	1
진안군	4	2	1	2	1	
제주 (21명)	서귀포시	8	5	2	3	1
	제주시	13	8	3	5	2
충남 (114명)	계룡시	4	2	1	2	1
	공주시	5	3	1	2	1
	금산군	4	2	1	2	1
	논산시	3	2	1	1	1
	당진시	3	2	1	1	1
	보령시	7	4	1	3	1
	부여군	4	2	1	2	1
	서산시	4	2	1	2	1
	서천군	4	2	1	2	1
	아산시	24	14	5	10	3
	예산군	3	2	1	1	1
	천안시	34	20	7	14	5
	청양군	3	2	1	1	1
	태안군	5	3	1	2	1
	홍성군	7	4	1	3	1
충북 (77명)	괴산군	2	1	1	1	1
	단양군	3	2	1	1	1

구분		우선계약대상자			차상위계층	
시도	시군구	모집 합계(A=B+C)	계약대상자(B)	예비후보자	계약대상자(C)	예비후보자
	보은군	3	2	1	1	1
	영동군	1	1	1	0	0
	옥천군	3	2	1	1	1
	음성군	7	4	1	3	1
	제천시	5	3	1	2	1
	증평군	2	1	1	1	1
	진천군	3	2	1	1	1
	청주시	37	22	7	15	5
	충주시	11	7	2	4	1
합계		2,084	1,233	472	851	326